

(사업방법서 별지)

**1. 보험종목의 명칭**

무배당 알리안츠유니버설보험

**2. 가입나이**

만15세 ~ 62세

**3. 보험기간**

종신

**4. 보험료 납입기간**

80세납

**5. 보험료 납입주기**

월납

**6. 보험가입금액**

1,000만원 이상

## 7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이 없음

## 8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### 가. 기본보험료

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

### 나. 추가납입보험료

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

### 다. 보험료 납입한도

#### (1) 기본보험료

가입나이	기본보험료
만15 ~ 49세	보험가입금액의 1% ~ 2%
50 ~ 57세	보험가입금액의 2% ~ 3%
58 ~ 61세	보험가입금액의 3% ~ 4%
62세	보험가입금액의 4% ~ 5%

#### (2) 추가납입보험료

- ①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연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%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회사는 매년 정한다.
- ② '①'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(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)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③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'①'의 한도를 적용한다.

- (3) '(1)' 및 '(2)'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.

## 9.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

- 가.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(24회 납입) 이내에서 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,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 납입시 공제한다.
- 나.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(24회 납입) 경과 후 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(수금비 제외)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(수금비 제외)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(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)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)에서 공제한다. 단, 수금비는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 납입시에 공제한다.

## 10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수금방법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다. 단,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, 1회당 최소 5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납입한다.
- 나. ‘가’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(24회 납입)까지(이하 “의무납입기간”이라 한다)는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를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.
- 다.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부터는 해약환급금(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)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)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.
- 라. “가”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회사에서 정한 총 납입보험료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.

## 11. 보험료 납입최고(독촉)기간에 관한 사항

- 가. 의무납입기간까지는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(독촉)기간으로 한다.
- 나.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(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)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최고(독촉)기간으로 한다.

## 12.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할 수 있으며,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
  - (1) 의무납입기간 이내에서는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
  - (2) 의무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(효력회복)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
- 나. '가'에 의하여 해지계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한다.

### 13.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'8. 보험료에 관한 사항'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나. '가'에 의하여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,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.
- 다.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처리하고,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.

### 14.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나. "가"에 의하여 변경되는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.
- 다.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기본보험료가 '8. 보험료에 관한 사항'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도 감액하여야 하며, 이 경우 '13. 기본보험료 감액에 관한 사항'을 따른다.
- 라.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될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약으로 보지 아니한다.

### 15. 계약자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년 경과 이후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는 보험년도

기준 연4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.

- 나.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(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)의 5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.
- 다.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.2%와 2,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,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.
- 라.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.

## 16. 계약자적립금의 계산

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은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## 17.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

- 가.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.
- 나.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.
- 다. 회사는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,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%를 최저한도로 한다.

$$\text{공시기준이율 산출식} = \frac{\text{내부지표} + \text{외부지표}}{2}$$

#### A. 내부지표

$$\text{내부지표 산출식} = \frac{2 \times (I - E)}{A_6 + A_0 - (I - E)} \times \frac{12}{6}$$

(주) ■ I : 직전 6개월간 투자수익

■ E : 직전 6개월간 투자비용

■ A<sub>6</sub> : 산출시점 직전 6개월초 현재 운용자산

■ A<sub>0</sub> :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

#### B. 외부지표

$$\text{외부지표산출식} = B1 \times r + B2 \times (1 - r)$$

(주) ■ B1 :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단,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(3년 만기)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(YTM)로 한다.

■ B2 :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

단,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 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-(3년 만기) 시가평가기준 수익률(YTM)로 한다.

■ r :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, 5%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.

■ 가중이동평균이율(B<sub>i</sub>) = 
$$\frac{B_i(-3) \times 1 + B_i(-2) \times 2 + B_i(-1) \times 3}{6}$$

- B<sub>i</sub>(-3) :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B<sub>i</sub>(-2) :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

- B<sub>i</sub>(-1) :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

라. '다'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['다'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]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.

마.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

지(상품공시실)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.

바.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.5%,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2.0%로 한다.

사.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「공시이율운용지침」에 따른다.

## 18. 기타

### 가. 연체이자율

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.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.

### 나. 보험계약대출이율

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「공시이율 + 1.5%」로 하고,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.

### 다. 선납보험료

(1)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(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)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며,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.(최대 23개월분까지 선납 가능)

(2) '(1)'의 경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여 당해보험료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.

(3)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아니한다.

라. 동 보험의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한다.

### 마.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

(1)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나이에

의하여 계산한다.

- (2)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(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)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.

#### 바. 완납종신보험으로의 자동전환

(1)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이 계약은 종신보험으로 자동전환된다. 단, 계약자가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8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 7일 이전까지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전환되지 아니하며 80세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된다.

(2)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가 70세가 되는 계약해당일부터 회사가 제시하는 소정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. [단,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가입시 나이가 48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]

(3) 제2항에 의하여 80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이 계약을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의 납입 및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없으며, 부가된 특약의 잔여납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도 완납하여야 한다.

(4) 완납종신보험으로 전환시 완납종신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의 계약자적립금을 종신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충당하여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.

사.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가입증서(보험증권)에 기재할 수 있다.

아.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계좌를 가입할 경우에는 한 계약의 보험가입증서(보험증권) 및 보험계약청약서로 운영할 수 있다.